

나. 제출이유

- 본 건의 보다 면밀한 추진을 위하여는 관계부처와의 방문면담 후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 관계부처와의 방문면담을 기 신청하였으나 그 일정이 추후 법도 통지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에 환동기간을 '94년 8월 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시·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건의안

의안번호	265
의결 년 월 일	94. 5. 12 (제28회)

발의년월일 : 1994. 5. 2

발 의 자 : 장명진의원외 43인

1. 주 문

-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차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95. 7. 1일부터 개시되나 현재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임기는 '95. 4. 14일로 만료되어 '95. 4. 15일부터 6. 30일까지 시·군·자치구 의회는 지방의정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만 95년 4월 14일 이전에 실시하거나 4개의 지방선거를 모두 4월 14일 이전에 실시하여 차기 지방의원 임기가 95년 4월 15일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두 가지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현 시·군·자치구의회의(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건의대상기관 : 내무부장관, 국회의장, 민자당대표위원, 민주당대표최고위원

2. 제안이유

- 현재의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95. 4. 14일 만료되나 '94. 3.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차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95. 7. 1일부터 개시되어 '95. 4. 15일부터 '95. 6. 30일까지 77일간 시·군·자치구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며 (헌법 제117조),
- 지방의정 공백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사유 중 지방의회 불

성립은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정공백기간은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헌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 (헌법 제118조)

- 우리는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관계법이 다시 개정되어 지방의정의 공백이 없기를 바라며, 관개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시·군·자치구의회의정공백방지

건의문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초대의원으로서 3년간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통해 축적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2대 지방의회에서의 내심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초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4년차인 지금은 지방의회 개원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경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화·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는데 반하여 현재의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임기는 동법 제31조 및 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4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95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군·자치구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또다시 77일간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지방 분권화를 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방의정의 공백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에 의존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중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

결처분 사유 중 지방의회 불성립은 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의정 공백기간은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헌법위반 상태가 초래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 지방의정의 공백기간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95년 4월 15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가 존재하지 못하므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어 지방행정에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과 아울러, 지방자치 행정에 인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게 되어 주민의 지방행정의 대한 불신과 불만고조 및 자치행정의 일대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방의회의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선거만 95년 4월 15일 이전에 실시하거나 4개의 지방선거를 4월 14일 이전에 실시하여 차기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임기가 95년 4월 15일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두 가지 방안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자치구의회의(의원)의 임기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단서조항을 보완해서라도 지방의정 중단이라는 중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의 막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와 연계하여 우리의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관계기관과 정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1994. 5. 12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근 거 법 규

헌 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 칙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인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제3조(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원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 '94. 회의개최 세부계획

회	기 간	회 의 일 수		주 요 안 전	비 고
		금회	누계		
제26회	2. 24(목) ~ 2.26(토)	3	3	• 특위구성 • 시정질문 • 조례안 심사	• 복사골예술제 : 4. 23 ~ 4. 30 • 경기도채전 : 5. 23 ~ 5. 25 • 경기도정기종합감사 : 7. 11 ~ 7. 23 • 읍지훈련 : 7~8월중(5일간) • 결산감사 : 9월중(20일간) • 결산승인안제출(10. 2)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1항 -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 • 예산안제출(11. 21)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 예산안의결(12. 21)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 행정사무감사 :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7회	3. 11(금)	1	4	• 상임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	
제28회	5. 12(목) ~ 5. 17(화)	6	10	• 시정질문 • 조례안심사	
제29회	6. 9(목) ~ 6. 14(화)	6	16	• 제1회추경예산안 • 조례안심사	
제30회	7. 4(월) ~ 7. 8(금)	5	21	• 조례안심사	
제31회	8.22(월) ~ 8.26(금)	5	26	• 시정질문 • 결산감사위원추천 • 조례안심사	
제32회	9.12(월) ~ 9.16(금)	5	31	• 조례안심사	
제33회	10. 6(수) - 10. 10(월)	5	36	• 예결특위구성 • 결산안심사 • 시정질문 • 조례안심사	
제34회	11. 2(수) ~ 11. 10(목)	9	45	• 행정사무감사개회 작성 및 감사준비 • 조례안	
제35회 정기회	11.25(금) ~ 12.29(목)	35	80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심사 • 조례안심사	

※ 본 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운영됩니다.

'9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문화공보 담당관실	○ 부천시립예술단체 운영의 내실화 • 예술단 정원의 20%가 건원상태로 단원확보 요망	○ 시립예술단 단원현황																																						
		<table border="1"> <tr> <th rowspan="2">부천필</th><th rowspan="2">정원</th><th colspan="2">'93년말</th><th colspan="4">'94년도</th></tr> <tr> <th>현원</th><th>결원</th><th>퇴직자</th><th>충원</th><th>현인원</th><th>결원</th></tr> <tr> <td>계</td><td>160</td><td>137</td><td>23</td><td>4</td><td>4</td><td>137</td><td>23</td></tr> <tr> <td>부천필</td><td>90</td><td>69</td><td>21</td><td>1</td><td>8</td><td>68</td><td>14</td></tr> <tr> <td>합창단</td><td>70</td><td>68</td><td>2</td><td>3</td><td>4</td><td>69</td><td>1</td></tr> </table>	부천필	정원	'93년말		'94년도				현원	결원	퇴직자	충원	현인원	결원	계	160	137	23	4	4	137	23	부천필	90	69	21	1	8	68	14	합창단	70	68	2	3	4	69	1
		부천필			정원	'93년말		'94년도																																
			현원	결원		퇴직자	충원	현인원	결원																															
		계	160	137	23	4	4	137	23																															
		부천필	90	69	21	1	8	68	14																															
합창단	70	68	2	3	4	69	1																																	
○ 인원충원 현황 • 합창단 - 충원일 : '94. 3. 11 - 인 원 : 4명 • 부천필 - 충원일 : '94. 4. 26 - 응시자 : 17명 - 합격자 : 8명 ○ 인원충원 현황 • 합창단 및 부천필 - 하반기 충원(8, 9원중) ○ 예로사항(참고사항) • 인원충원은 연 4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유학 등의 관계로 퇴직자가 다수 있음																																								
시 정 과	○ 동장임용 - 동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행정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임	○ '94. 3.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 후부터는 일반직 5급으로 동장을 임용토록 하겠음																																						

소관부서	지 직 사 항	치 리 결 과																									
사 회 진 흥 과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소홀 • 기 지원된 새마을소득 지원금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자금이 제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금 회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	○ 총지원액 : 960,500천원 ○ 회 수 액 : 514,000천원 ○ 미회수액 : 446,500천원 • 시기미도래 : 432,000천원 • 시기 경과 : 14,500천원 ○ 추진계획 • 시기경과 제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및 최고장 발송은 물론 징수 독려반을 편성 조기회수 유도																									
오 정 구	○ 민원창구 공무원 배치 부적정 •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창구 공무원에 8급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나 일용직, 기능직을 배치하고 있음	○ 향후 인력충원 시 부천시 인사규칙에 의거 행정경험이 있는 8급이상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사 회 파 (시·구)	○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 효율적 운영 • 부천시 이웃돕기 기금 금고 지부 설치규정에 지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음. 법적인 하자없이 구에서도 지원가능토록 시정요구	○ 경기사회 65121-711('94. 4. 8)호로 지시된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관련법 규가 시·군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래 훈령 등의 불합리한 조문을 경기도에서 정비중인 바 ○ 향후 준칙안이 시달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청 소 과 (구)	○ 가로청소원 "조장"제도 폐지 • 가로청소원은 277명중 20명이 조장으로 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 동료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조장제도 폐지	○ 현행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 - 감독 : 구별 1명 - 조장 : 17~19명당 1명 - 반장 : 구별 2명 ○ 조장제도 폐지 처리내용																									
		<table><tr><th>구 분</th><th>현원</th><th>폐지인원</th><th>조치일</th><th>비 고</th></tr><tr><td>계</td><td>17</td><td>17</td><td></td><td></td></tr><tr><td>원미구</td><td>8</td><td>8</td><td>'94. 5. 1</td><td>※ 실시예정</td></tr><tr><td>소사구</td><td>4</td><td>4</td><td>'93.11.11</td><td></td></tr><tr><td>오정구</td><td>5</td><td>5</td><td>'94. 2. 1</td><td></td></tr></table>	구 분	현원	폐지인원	조치일	비 고	계	17	17			원미구	8	8	'94. 5. 1	※ 실시예정	소사구	4	4	'93.11.11		오정구	5	5	'94. 2. 1	
구 분	현원	폐지인원	조치일	비 고																							
계	17	17																									
원미구	8	8	'94. 5. 1	※ 실시예정																							
소사구	4	4	'93.11.11																								
오정구	5	5	'94. 2. 1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공 업 과	○ '9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94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20억원)하여 '94년 1차 추경시 예산 확보 지원토록 요구	○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 요구액 : 10억원 ○ 향후계획 • 예산확보 시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의거 업체선정 지원 - 지원계획 : 10개 업체
산 업 과	○ 농수산물 직판장 조기설치 •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을 '95년도에 중동2단계 개발지구내에 계획하고 있는바 • 타 지역이라도 타당성 검토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	○ 농산물 직판장 추진현황 • 사업기간 : '94. 1~'95 • 사업주체 : 부천 농업협동조합 • 위 치 : 중동신도시내 K 15, 16, 17 • 규 모 - 부지 : 829평('92. 2. 20 부지확보) - 건물 : 연 2,989평('93. 9. 13 건축허가) - 층수 :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 • 직판장 설치 추진상황 - 입지 및 시장성 검토 : '93. 12. 13 - 설치확정 : '94. 2. 20 - 설치면적 : 건물 150평(지하1층에 설치) • 사업비(150,000천원) - 도비 : 37,500천원 - 시비 : 37,500천원(1차 추경시 확보) - 자담 : 75,000천원 • 현 공사추진상황 - 지하 터파기 작업 착공('94. 3. 24)
교 통 행 정 과	○ 시내버스 노선 변경 • 신도시에서 부천남부역간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버스노선 신설 요구	○ 노선버스 신설운행 - 노선번호 : 22-1 - 운행일시 : '94. 2. 20 - 운행대수 : 6(상용차 4, 예비차 2) - 운행계몽 - 소사동~부천남부역~전화국~중동주공 APT~미리내마을~포도마을~은하마을~중흥마을

소관부서	지 직 사 항	치 리 결 과
오 정 구	○ 환경미화원 관리 미흡 • 순환보직을 분기별 변경하여 사기진작을 제고토록 시정요망	○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작업환경 등을 감안하여 순환보직은 필요하나 ○ 매 분기별로 보직을 순환할 경우 잦은 작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작업능력 감소와 근무의욕 감퇴가 예상되므로 ○ 이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순환보직 할 계획임 ※ '94상반기 순환보직은 87명에 대하여 각 동별로 '94. 4. 26 완료하였음
가 정 복 지 과	○ 경로당 지원시 일률적 지원요구 • 시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편중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상을 남기고 있어 일률적 지원대책이 요구됨	○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음 ※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2만원, 도비1만원, 시비 2만원을 개소당 지급하고, 난방비는 개소당 월 25만원씩 지원
도 시 과	○ 체비지 점유료 부과철회 • 부천시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비지 점유자에 대한 점유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부과 정수토록 시정조치 요망	○ 체비지 대부료 부과정수 조례제정 추진 (추진실적) - 조례(안)작성 : '94. 2 - 조례(안)입법예고 : '94. 3. 3 (향후 계획) - 주민의견수렴 반영 및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94. 4 - 시의회 조례상정 : '94. 5 - 부과대상자 최종실태 파악 및 확정 : '94. 6 - 사용료 부과확정 : '94. 7 - 사용료 부과정수 : '94. 8

소관부서	지 직 사 항	치 리 건 과
공영개발 사 업 소	○ 재정운영 계획 및 자금충당방법 추진미흡 • '93년도에 이차액 발생이 112 억원으로 해소방안 연구가 요구되며 '94년도 세입예산 책 정시 전문가를 통한 진당 및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등 고금 리 이자로 인한 재정손실이 없도록 시정	○ 공사발주 10억이상 사업 대물변제 실시 • 기 간 : '93. 11. 17부터 • 대물변제 : 상업용지 변제 • 비 율 — 10억이상~ 30억이내 : 50% — 30억이상~ 50억이내 : 55% — 50억이상~ 70억이내 : 60% — 70억이상~100억이내 : 65% — 100억이상 : 70% ○ 고금리 사모공채 상환 • 기 간 : '94년도 • 대 체 : 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입 373억원(금리 8%) ※ '94. 3. 3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신청
공영개발 사 업 소	○ 중동대로(송내역~경인국도)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미흡 • 송내역 지하차도(길이 32m) 1차 공사가 민원야기로 지연 시민불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원활한 협의 보상으로 공 사를 조속 추진	○ 민원내용 • 장기 임대아파트 요구 • 가 이주 단지 조성 • 투쟁기간동안 보상 • 영업권 보상의 현실화 ○ 그간의 추진사항 • 공공임대APT(16~19평형)알선 신청접수 : '94. 3. 8~3. 31 • 지토위 재건신청: '94. 2. 23 • 강제철거 안내문 발송: '94. 3. 26 ○ 추진계획 • 세입자 자진이주 지속유도 및 계속 거부 시 '94 상반기중 행정 대집행 조치예정

소관부서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소 사 구	○ 가로수 전지전정 철저 • 한전에서 가로수 전지 의뢰시 사업비를 전도받아 구청에서 직접 전지 실시	○ 가로수 전지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의 전지계획 구간인 성심고가~서울시계간의 전지사업비 4,761천원을 전도받아 전지 공사중임 ※ 완료 예정일 : '94. 4월중 완료
수 도 파 (오정구)	○ 수도계량기 검사소 설치 • 수도계량기 고장원인을 검사할 수 있는 정밀검사소 설치 검토 요망	○ '94. 1. 19 경기도에 계량기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 시·군 공통사항으로 도 단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추후 도의 방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구 (공 통)	○ 공시지가 조사 철저 • 표준지를 전체 필지의 2%로 지정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개별필지 지가에 대입하고 있는바 향후 정부지침에 의존치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부동산 관계자와 사전협의 산정토록 개선 요망	○ 표준지의 지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관리지침에 규정되어있어 자체 기준 마련은 어려움